



349 2011. 12. 5()



고 시

2011-65



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:

:

(309-4071)



고 시

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1-65호

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22조, 24조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1년 12월 5일

부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고시기간 : 2011. 12. 5. ~ 2011. 12. 20.
2. 고시장소 : 북구 공보, 게시판 및 홈페이지
3. 고시내용

○ 도로명주소(폐지) : 부산시 북구 시랑로 80외 2

구분	주소	비고	고시일자
	80		2011.12.02
	82		2011.12.02
	1016 가 26		2011.12.02

○ 도로명주소(부여) : 부산시 북구 시랑로 80외 2

구분	주소	비고	고시일자
	()		
	1261-43	80	가 2010. 2. 3
	915-34	1016 가 26	10,160M 2010. 2. 3
	1252-5	132 17-4	1,320M 2010. 2. 3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1.12.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